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범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3 호 “차입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 1023 호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비용의 자본화 혹은 비용처리 중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7 호 “금융비용자본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의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3 호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하여 취득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차입원가(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차감 후)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이하 “일반차입금”)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입원가에 대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격자산에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서는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문단 11) 실무적으로 일반차입금에 포함되어야 할 차입금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A 사는 사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적격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A 사는 영업손익으로 충분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적격자산을 건설하고 있던 중 전략적으로 B 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하였다. 회사의 이사회회의록에는 B 사의 인수와 관련한 차입금 조달 내용 및 사용계획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의 사용을 인수에 제한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동 차입금은 M&A 에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적격자산의 지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한 일반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의 주장은 타당한가?

상기 사례에서 경영진은 M&A 에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에 포함할 일반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기준서 제 1023 호의 문단 10 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라고 차입원가를 정의하고 있으나, 문단 14 는 아래와 같이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 산정 시 고려할 차입금에는 회사의 모든 차입금에서 특정차입금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문단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 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문단 10 과 문단 14 의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이견들이 존재하여 왔고 문단 10 에 따라 적격자산의 지출에 특정한 특정차입금은 아니나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적격자산의 지출이 없더라도 회피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일반차입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9년 7월, 문단 14가 이미 일반차입금을 고려 시에는 적격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만을 제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M&A 목적으로 자금 취득, 또는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 등의 취득 목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한 이를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례 2. B사는 전기에 특정 설비와 본사사옥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동 설비와 사옥 모두 기준서 제 1023호에 따른 적격자산에 해당한다. B사는 동 설비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금을 조달하였으며 설비의 건설에 사용하였다. 회사에는 동 특정차입금 외에도 다수의 일반차입금이 존재한다. 회사는 당기 말 설비의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동 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은 아직 상환하지 못하였다. 당기 말 현재 본사사옥은 여전히 건설 중이며 설비의 특정차입금은 익년 중 상환할 계획이다. 경영진은 미상환 특정차입금이 설비의 건설을 위해 조달되었고 당기 말 현재 설비의 건설은 완료되었으므로 동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차입원가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의 주장은 타당한가?

당기 말 현재 설비는 더 이상 적격자산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금은 더 이상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하여 취득한 자금”(특정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차입금이 사용되었던 적격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후에도 특정차입금이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는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자본화 이자율 계산시 포함되어 다른 적격자산(상기 사례에서는 본사 사옥)에 자본화 되는 것이 적절하다.

상기의 차이 외에도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7호에서는 “전기이전에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당기 자본화대상자산의 평균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A36 문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3호에서는 “회계기간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기간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기 이전의 자본화된 차입원가도 평균지출액에 포함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일반차입금의 평균지출액 계산에 포함할 금액에서도 기준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기업들은 상기와 같은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고려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박상은 회계사

사업결합을 포함한 종속기업 등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의 현금흐름표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07 호 현금흐름표에서는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시 현금흐름표 표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기준서 제 1007 호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 및 사업결합과 관련된 총현금흐름을 별도로 투자활동으로 분류 표시하고, 이 때 현금 지급 또는 수취액에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등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3 호 사업결합 및 제 1027 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과 2009 년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의 영향으로 제 1007 호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 1007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표 표시에 대한 내용과 개정에 따른 영향을 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결합시 발생한 취득관련원가의 현금흐름표 표시 방법

2009 년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지출만을 투자활동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제 1103 호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더이상 영업권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관련원가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결합의 결과 발생한 조건부대가를 부채로 분류하고 이후 지급요건의 충족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흐름표의 표시 방법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에 대하여 지급한 현금은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부채로 분류한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기록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며, 제 1103 호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부채로 인식한 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부채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현금의 지출액은 자산의 인식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영업활동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부채로 기록되었던 금액은 사업결합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투자활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3. 종속기업 지분의 추가취득이나 처분이 지배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수수한 현금의 현금흐름표 표시 방법

제 1027 호의 개정내용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현금흐름은 소유주와의 기타 거래와 동일하게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 때 발생한 취득관련원가의 경우 동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증분원가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제 1032 호 금융상품:표시와 일관되게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기타 사항의 현금흐름표 표시 방법

종속기업 지분의 매각으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현금 수취액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며, 종속회사가 비지배지분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일반적인 배당지급액과 동일하게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으로 표시한다.

5.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한 경우 요구되는 현금흐름 관련 공시사항

- (1) 총취득대가 또는 총처분대가
- (2) 매수대가 또는 처분대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부분
- (3)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
- (4)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부채 금액에 대한 주요 항목별 요약정보

제 1103 호 사업결합 및 제 1027 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 따른 제 1007 호의 개정내용은 2009 년 7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 년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른 개정내용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채와 자본의 분류 -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된다.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①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또는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문단 11)

따라서,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 1) 일정 기간 이후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금융상품

A사는 5%의 확정 배당을 지급하는 증권을 발행했다. 단, A사는 배당을 이연할 수 있는 옵션과 동 금융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 증권의 보유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금융상품에는 배당의 'step-up'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A사가 상기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A사가 2년 경과시점부터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당은 25%로 증가하게 된다.

사례 2) 과거에 매년 배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B사는 6%의 액면이자율을 지급하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B사는 동 금융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유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B사는 배당을 이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B사는 과거에 매년 액면이자를 지급한 실적이 있고, 현재의 채권 가격은 액면이자가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보유자들의 기대 하에 예측되었다. 또한, B사는 액면이자를 매년 지급할 것이라는 정책을 공개했다.

위 사례의 경우 A사와 B사는 상기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사례 1)

A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의 상환과 배당의 지급은 A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A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다.

A사가 배당이 증가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을 상환할 경제적 강제성은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상기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사례 2)

B사에게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채권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압력과 액면이자를 지급할 의제의무는 있다. 그러나, 계약상 B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의 상환과 배당의 지급은 B사의 재량에 따르므로 B사에게 액면이자를 지급하거나 금융상품을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될 것이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